

2022년 제2회(재공고) 부산광역시 경력경쟁(의무직5급) 임용시험 공고

2022년 제2회(재공고) 부산광역시 의무직 5급(일반의무)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2일
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8308호, 2022.1.21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2605호, 2022.4.27.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, 2022.4.27.)
-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4078호, 2022.2.16.)
- 2022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(2022.1.28. 공고)

2. 임용예정 인원

직 렬	직급	인원	응시자격	근무예정지
의무직 (일반의무)	5급	7명	의사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	부산광역시, 구·군

※ 근무지별 구분모집: 부산시 1명, 부산진구 1명, 남구 2명, 사하구 1명, 연제구 1명, 사상구 1명
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예정기관명 (근무예정부서)	임용분야	직렬·직급 (인원)	주요 업무
부산광역시 (시민방역추진단)	일반의무 (감염병관리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염병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○ 국내외 감염병 동향분석 및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○ 기초지자체 대상 감염병 관리지도 및 교육 등
부산진구 (보건소 보건행정과)	일반의무 (역학조사관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(역학조사관)○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방문·일반 진료에 관한 사항○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

임용예정기관명 (근무예정부서)	임용분야	직렬·직급 (인원)	주요업무
남구 (보건소 건강증진과)	일반의무 (진료의사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진료 ○ 예방접종 예진 ○ 채용·건강검진 결과 관리 및 X-ray 판독 등 ○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 ○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
남구 (보건소 보건정책과)	일반의무 (역학조사관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○ 보건소 방문 일반환자진료 및 예방접종예진 ○ 결핵관련 사업 ○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
사하구 (보건소 보건행정과)	일반의무 (역학조사관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 감염병(1~4급)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 ○ 식중독 발생 관련 역학조사 ○ 예방접종 예진 및 이상반응 역학조사 ○ 기타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련 업무 ○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
연제구 (보건소 보건행정과)	일반의무 (역학조사관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, 결과 분석 ○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○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 ○ 감염병 역학조사 전반 및 역학적인 연구 ○ 예방접종예진 및 이상반응 역학조사 ○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
사상구 (보건소 보건행정과)	일반의무 (역학조사관)	의무5급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 ○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○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련 업무 ○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관련 사업 등

4. 응시 자격

* 자격요건은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 예정일 기준임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같은 법 제66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자격요건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,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
5. 보수수준

- 보수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하며, 기타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함

6. 시험방법

가. 1차시험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시험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 대상)

-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- 평가방식: 5개 평정요소 마다 상, 중, 하로 평가
 - ※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합격자 결정
 -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함
 - 불합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임용 인원수만큼 합격자로 결정

7. 시험 일정(예정)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 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
'22. 9. 22.(목)	'22.10.5.(수) ~ 10.7.(금)	서류전형	'22.10.12.(수) ~ 10. 14.(금)	부산광역시청	'22.10.19.(수)
		면접시험	'22.11 3.(목) ~ 11. 4.(금)	부산광역시청	'22.11.10.(목)

※ 시험일, 면접 장소,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8.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2. 10. 5.(수) ~ 10. 7.(금) ▷ 취소기간: 10.5.(수) ~ 10.11.(화)
- 접수방법: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
 -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의 처리단계별 안내에 따라 접수
 - 접수 및 문의: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 (☎1522-0660)

나. 서류 제출

- 제출기간: 2022. 10. 5.(수) ~ 10. 11.(화) 18:00까지
 - 제출처: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(10층)
 - 제출방법: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
 - 제출서류: (공통사항) 이력서, 의사면허증 등
(개별사항) 주민등록초본, 경력사실확인증명서 등
- ※ 접수시간은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
[우편접수처 안내]

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

※ 우편접수(등기)는 서류제출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.

※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.

9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- ②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 - 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- ⑤ 의사면허증 사본 1부

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
- ※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증서로 대체 가능
- ※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
⑦ 경력 증빙서류(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) 1부

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- ※ 발행기관의 사업장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-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일 기준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'주당 근무시간'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확인증명서' 추가 제출 <별지 제6호 서식>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-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

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- ※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

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⑩ 증명사진 1매(3.5×4.5cm)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①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,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② 경력사실확인 증명서 1부<별지 제6호 서식>

③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 능력 관련 증명서

- ※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④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

⑤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 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

- ※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<자유서식>

- ※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

10. 유의사항

-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 - ※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)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
- 모든 증명서는 **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**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
-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(☎051-888-1975)으로 문의

붙임 1. 직무기술서 각 1부.

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. 끝.